



담당자	책임자	BOM	지점장

자동대체 약정서

당사(본인)는 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 거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자동대체를 의뢰합니다.

제1조 (자동대체 대상거래 지정)

자동대체 대상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합니다.

1. 외국환거래약정(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거래)에 의한 일체의 결제대금
2. 외국환거래약정(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내국신용장어음매입(추심)거래)에 의해 수반되는 일체의 수수료 및 비용
3. FX 거래후 고객이 당행에 매도하여 결제할 자금
4. 당발송금(국내외화자금이체 포함) 또는 타발송금에 수반되는 수수료
5.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당행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구체적으로 언급 :)

제2조 (출금계좌 지정)

인출하는 계좌는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출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출금계좌인감

제3조 (자동대체방법)

은행은 거래처에 대해 제1조의 자동대체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 인감(또는 서명), 비밀번호 없이 제2조에 기재된 출금계좌에서 대체금액을 인출합니다.

제4조 (신청내용의 변경·해지 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5조 (약정 해지)

1. 마지막 자동대체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대체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은 별도의 해지 통보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조에서 지정한 원인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면책)

제1조에서 지정한 대상거래가 발생하여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하였을 경우 은행은 인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 인출시마다 거래처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예금주명

(인) 법인인감

※ 첨부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2. 위임장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대리인실명확인증표 5. 출금계좌 통장사본

(주)한국씨티은행

DE-A-290 (2012.05.10)

